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307회 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및 청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4. 9.

기획재경위원회 전문위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및 청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4. 9. 25.
기획재경위원회

1. 검토과정

○ 안 건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및 청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제 출 자: 달서구청장(일자리지원과장)

○ 제출일자: 2024. 9. 12.(목)

○ 회부일자: 2024. 9. 12.(목)

○ 검토기간: 2024. 9. 12.(목) ~ 9. 20.(금)

2. 제안이유

○ 청년들의 성공적인 창업을 전주기적으로 지원하고, 청년들의 사회적 참여와 커뮤니티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설립·운영되어 온 달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및 청년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4. 12. 31.로 만료 예정임에 따라,

○ 창업 지원 및 청년 정책에 있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민간위탁 운영자를 재선정하고, 두 센터의 유기적 협력과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동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창업 및 청년활동 지원의 각 역할을 극대화하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시설 현황

- 소 재 지: 달서구 중흥로 3(송현동)
- 규　　모: 부지 338㎡, 연면적 609.36㎡(지상 3층)

층 별	시 설 명	연면적	시 설 구 성	現 위탁현황
1층	청년센터	200.36㎡	○상담실　○창의·오픈 공간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2022.6.1.~ 2024.12.31.)
2층 (공동사용)	청년창업 지원센터	205.79㎡	○교육장　○회의실　○사무실	
3층		203.21㎡	○입주공간 13개소(1인실 9, 2인실 4) ○자유석 3석　○사무기기실　○탕비실	

※ 위탁금액: 377백만원 정도(청년창업지원센터 225, 청년센터 152)
※ 인력운영: 3명(비상근 센터장 별도)

나. 위탁개요

○ 위탁사무 내용

〈청년창업지원센터〉

- 청년창업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 입주기업 선발, 관리, 교육, 컨설팅, 정부지원 사업 연계, 투자유치 등
- 청년창업가 사업화 지원, 홍보 및 마케팅 등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 창업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청년센터〉

- 청년센터 관리 및 운영
- 청년의 참여확대를 위한 플랫폼 구축 및 청년활동지원
- 청년의 능력개발 및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 실행·지원
- 청년의 자립 성장과 권익증진 등을 위한 정보제공 및 지원
-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 등 지원

○ 위탁기간: 2025. 1. 1.~2027. 12. 31.(3년)

○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심사위원회 심사・선정

4. 관련조례

○ 「대구광역시달서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13조

○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제18조, 제22조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10조

5. 검토의견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2년 6월 1일부터 위탁운영중인 청년창업지원센터 및 청년센터의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2년 7개월) 만료예정으로,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재위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 區 경제・행정분과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에게 민간위탁 적정성에 대한 자문을 사전에 거쳤으며, 행정의 공익목적과 민간의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고 전문성과 지속성을 고려한 민간위탁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대구광역시달서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제13조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제20조에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본 동의안은 제출 근거 및 절차 등이 적절하고 청년들의 창업지원과 다양한 분야의 참여기회 및 자립기반 형성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민관위탁의 필요성이 충분하며, 법령 및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사전 검토 의견】

○ 청년창업지원센터

- 경제·환경분과위원(김용원 대구경북고용복지노동연구원장, 권오상 한국환경기술인협회대경협회장, 김채환 대구생명의 숲 위원장)

검토기준	검토의견
다른 사무방식으로 수행 가능성	· 기준인건비에 따른 공무원 증원의 한계에 따라 탄력적인 인력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창업 분야에서는 전문성을 갖는 민간위탁을 통해 탄력적 운영과 더불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임 · 전문성과 지속성을 고려하면 그간의 민간위탁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던 바, 현행의 민간위탁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	·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의 성공적 창업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익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에 위탁하여 전문적 역량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 민간위탁 시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구에서도 제반의 기능을 갖추어야 할 것임
경제적 효율성	· 개소이래 성과를 볼 때, 행정의 공익목적과 민간의 능률성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으며, 민간의 행정참여를 확대하여야 하는 당위성이 있고, 사무간소화에 따른 행정능률의 향상이라는 무형의 경제적 효과까지 포함하면 아주 높은 효율성을 이루고 있다고 판단됨 · 민간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기술·기업과의 협업경험 등의 값진 자원들을 청년들의 창업을 위해 최소의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어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이 매우 높음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민간기관이 특정 영역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축적해 온 전문지식·기술 및 경험 등을 더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음 · 민간기관의 경험과 네트워크를 통하여 민간의 전문지식과 기술활용 가능성은 탁월할 것임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지역 산업체, 연구기관 및 정부와 다양한 산학협력 사업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민간단체는 정확한 성과측정을 할 수 있는 자체적으로 전문인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성과 측정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 투명한 운영 및 가시적인 성과로 성과측정에도 민간위탁이 용이하다고 봄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수탁기관과 구의 잦은 교류 및 건의사항 발굴 등으로 투명성을 제고할 것을 권유함 · 공익목적의 비영리 민간기관은 정부 부처별 관련 법령, 규정 및 지침 등을 준수하고 기관의 신뢰도를 높여야 하므로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음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 민간기관의 창업관련 지식과 다양한 응용기술경험이 성공적인 청년창업을 위한 서비스공급 측면에서 유리할 것임

○ 청년센터

- 행정·재정·교육분과 위원(우성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 이정태 경북대교수)
- 복지·문화·보건분과 위원(성지혜 대구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팀장)

검토기준	검토의견
다른 사무방식으로 수행 가능성	· 달서구가 자체적으로 청년센터를 운영할 경우 전문인력 확보 및 유지가 어려울 수 있음 · 공공과의 협력을 통해 운영하는 방식이기에, 공공성과 민간의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에 민간위탁이 적절함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	· 민간위탁의 경우 공공성 및 안전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지만 관리 기관인 구청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보장할 수 있음
경제적 효율성	· 민간의 재원 배분은 공공보다 경직되지 않은 경향 있어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자원을 배분할 수 있음 · 수탁기관이 경제적 효율성 부분에서 최대한 경영 전략을 수립하여 효율성을 보장하도록 함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청년 관련 프로그램 운영, 상담, 창업지원 등 민간의 전문성 활용 가능함 · 민간위탁을 통해 다양한 사회단체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청년참여율, 프로그램만족도, 고용창출효과, 지역기여도 등 정량, 정성 효과 등 다양한 지표가 활용될 필요 있음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민간위탁의 경우 투명성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감독기관인 구청이 해당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업무 및 예산에 대한 공개를 시행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음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 더 나은 서비스 공급을 위해 민간의 경쟁을 유도하는 것은 서비스 질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관 련 조 례】

□ 대구광역시달서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13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제18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① 구청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취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창업기반 조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거나 청년고용 확대에 직접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을 개선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2조(청년센터의 설치 · 운영)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청년센터(이하 “청년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청년센터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청년의 참여확대를 위한 플랫폼 구축 및 청년활동지원
3. 청년의 능력개발 및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 실행 · 지원
4. 청년의 자립 성장과 권익증진 등을 위한 정보제공 및 지원
5.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
6. 청년지원사업을 운영하는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청년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청년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등)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관사무 중 조사 · 검사 · 검정 ·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 ·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6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 위임사무는 미리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2.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

② 구청장이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90일 전까지 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항 각 호에 의해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12. 11.)

제7조(민간위탁 동의안) 구청장이 제6조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재계약 시에는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평가 또는 감사결과
9.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수탁대상기관의 인력 · 기구 및 재정부담능력
2. 수탁대상기관의 시설 · 장비 및 기술보유의 정도
3. 수탁대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지역간 균형분포 등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수탁기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기관심사위원회) ① 수탁기관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수탁기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

로 구성하되, 심사가 끝나면 해당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관계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밖에 법률 전문가 등 구청장이 위원회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탁기관의 적격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수탁시설의 향후 운영계획
2. 대표자 및 상근근무자의 전문성
3. 위탁 재산의 관리 · 운영 능력
4. 제8조 수탁기관 선정기준의 충족 여부
5. 그 밖에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

⑥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에 대한 사항과 위원의 제척 사유 등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계약의 체결 등)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된 때에는 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서에는 위탁내용, 위탁기간, 수탁기관의 의무, 예산지원액 및 계약위반시의 책임 그밖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위탁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